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22일 한혜경, 김정기 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년 7월 12일)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혜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4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며 부천시는 이에도 못 미치는 1.124명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53.9%

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1.5%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고, 부천시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5%에 불과한 상태로 특히 임신과 육아기에 해당되는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19.2%, 21.7%로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음. 현재 일을 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미취업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원의 36.4%가 육아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취업여성의 81%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로 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장애물은 육아인 것임.

○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동네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부모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육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임.

○ 부천시 여성들은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들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부천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을 해온 것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보육수요와 다양한 욕구, 특수한 지역실정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야 할 때임. 이에 따라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고자 부천시 보육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이념과 시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

○ 시장은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

○ 영유아 학대 및 체벌의 금지, 차별금지, 건강관리 등 어린이 집 영유아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

○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

○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9조)

○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4조)

○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조례

○ 영유아 보육법

○ 부천시 보육 조례

○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다. 사전 의견수렴 경과

○ 2010년 10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가족분과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주최로 보육정책토론회 개최, 보육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 2011년 4월 부천시 보육조례 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활동

○ 2011년 4월 부천시 보육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팀 구성·활동

○ 2011년 5월 18일 보육교사 간담회

○ 2011년 5월 31일 학부모간담회

○ 2011년 6월 15일 보육조례 개정안 대학교수 자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보육조례개정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육시설연합회도 참여하였는데 참여단체간 의견합의가 되었는지?	○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최대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 당초 강제규정중 국공립보육시설 행정동마다 설치,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에 관한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고, 보육공동체와 관련 항 사항임.
○ 보육공동체의 개념은 무엇인가?	○ 보육 품앗이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자녀들을 공동으로 보육하는 것을 의미함.
○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보육교사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기준을 정한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어린이 집 연합회는 현재 조직과 별개의 조직인가?	○ 법령에 근거한 조직을 말함. (이상 한혜경 의원)
○ 보육공동체는 법령에서 정한 보육시설이 아닌데 시장이 지원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음. 시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함.
○ 국공립보육시설을 행정동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점차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봄.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보육시설 환경이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잘 알겠음.
○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순위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데?	○ 수정이 필요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번 수탁자 선정하는 것 보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법령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상 가족여성과장)

※ 기타 질의답변은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보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160
의 결 연월일	2011. 7. 12

제안년월일 : 2011년 7월 12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보육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삭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시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운영·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제41조제5항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4항)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보육정보센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7조제2호 및 제4호, 안 제33조제4항)

○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완화함(안 제32조)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계획수립의 시작단계, 중간단계, 결과보고 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를 “시장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로 한다.

안 제7조제2호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우선입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복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8. 그 밖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안 제33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심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안 제4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안 제4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중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로 본다”를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임) ①~③ (생략) ④ 시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조(책임) ①~③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④ (개정안과 같음)
제5조(주민참여) ① (생략) ② 시장은 계획수립의 시작 단계, 중간 단계, 결과보고 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하생략).	제5조(주민참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과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하 개정안과 같음).
제7조(기능) (생략) 1. (생략)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생략)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9. (생략)	제7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정안과 같음)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9. (개정안과 같음)
제19조(비용) ①~② (생략) ③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9조(비용) ①~② (개정안과 같음) 《삭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2조(우선입소)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2. 한부모 가정의 자녀 및 차상위층 아동 3. 장애인 가정의 아동 4. 맞벌이 가정의 아동 5. 다문화 가정의 아동 6.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7.「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영유아 8. 그 밖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의 아동	제32조(우선입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복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8. 그 밖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33조(위탁운영)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33조(위탁운영)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④ (생략)	①~④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⑤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⑥~⑦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나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책임) ① 부천시장(다음부터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

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과 중소기업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6개월 전에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위원회의 회의 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기타 보육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장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비용수납 및 보육료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취약지역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3.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

4. 어린이집 원장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여성·복지·아동 관련)

6.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

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각 1회씩 매년 4회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

적위원 5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부천시보육정보센터(다음부터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

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에 보육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르며,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교육실을 둔다.

제16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상담지도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 및 상담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아동보육 수요조사
6.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7.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8.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9.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지도

10.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11.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력 관리 및 운영

12. 지역주민 육아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그 외에는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시가 직영하는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전문요원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⑥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①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보육정보센터는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익 보장

제20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①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유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영유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영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보호·감독을 받는 영유아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기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성장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1조(차별금지) ①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집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거나,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2조(안전관리 체계정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안전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상담 및 구제요청) ① 영유아 및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요청에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건강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급식 관리) 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 배식,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 및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장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보육교직원 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시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고,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30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천시의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야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우선입소)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복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8. 그 밖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3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초 위탁기간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에 따른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천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협약시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⑦ 어린이집 원장은 타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

제36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대책,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위탁 또는

재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39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시설의 장 및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외 기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시설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비용의 지급 등

제40조(아동의 보육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아동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입양아의 보육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비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등 취약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주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가정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

체를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았을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제38조(위탁의 취소) 규정에 해당한 때

제8장 지도 및 감독

제43조(지도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

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행정처분,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어린이집연합회

제45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